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 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신설된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설정(안 별표4 제3호의2)
- 나.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실시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위반행위란 제3호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3의2. 법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 제2호의3	100만원

별표 4 제4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3”을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4”를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5”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5”를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6”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6”을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2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7”을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42